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늘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6-8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일상 속 소규모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,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그늘해드림센터 목적, 정의, 설치·운영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나. 그늘해드림센터 기능, 지원대상, 운영시간(안 제4조~제6조)

- 그늘해드림센터의 기능 및 지원대상, 범위 규정

마. 그늘해드림센터 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, 운영관리(안 제7조~제9조)

- 그늘해드림센터 신청절차 및 처리기준 규정

바. 그늘해드림센터 사무의 위탁, 홍보 및 준용(안 제10조~제1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6. 7. 24. ~ 8. 1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재입법예고 : 2026. 8. 19. ~ 8.2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6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7)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수정 의결(2026. 8. 18.)

- 조례명 수정, 목적, 설치·운영에 센터명 추가, 신청방법 추가 등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헤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헤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생활민원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·운영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그냥헤드림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정 내 전기·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
2. 기초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
3.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
4. 그 밖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센터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
2. 제1호 외의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3.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운영시간)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, 센터의 휴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신청절차) ①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구두,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,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생활민원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48시간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처리 예정일까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센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2. 재료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인 경우
3.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

제8조(지원내용) ①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 재료에 수반되는 비용(이하 “재료비”라 한다)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를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료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가구별 연간 지원횟수 등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서류 등 관리) ① 센터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대장, 장비대장,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과 관련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사무 위탁)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민원 처리를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홍보)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고,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추계서

I 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제5조(지원대상), 제8조(지원내용)

나. 수입발생 요인 : 없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세출	○ 시비보조금	-	-	-	-	-	-
	○ 구비보조금	116,250	119,738	123,330	127,030	130,841	617,189
	소계(b)	116,250	119,738	123,330	127,030	130,841	617,189
□ 총 비용(a-b)		116,250	119,738	123,330	127,030	130,841	617,189

- 비용 : 인건비, 운영비 등

4. 재원조달 방안

-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구비로 충당하며, 연도별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국 어르신정책과 한병철
연 락 처	02-3153-8863